

「지방자치법」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 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
(심 현 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1년 11월 23일

발 의 자 심현정,이주웅,박찬원,
장문혁,지광천,이명순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칙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」 일부개정
- 나. 「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」 일부개정
- 다. 「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입법예고 : 2021. 11. 15. ~ 2021. 11. 21.(6일간), 제출의견 없음.

「지방자치법」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
제1조(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」의 개정)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 및 제7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 및 제83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45조제1항”을 “제5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법 제63조제1항”을 “법 제7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법 제66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7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의안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. 다만, 그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야 한다.

제30조의 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41조제2항제1호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13조”로 한다.

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46조제3항 단서 중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

다만,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.

제48조제2항 중 “법 제64조”를 “법 제73조”로 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일반”을 “주민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법 제15조의2제2항에”를 “「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제60조제1항 전단 중 “**법 제59조제2항**”을 “**법 제68조제2항**”으로 한다.

제77조제1항 전단 중 “**법 제42조제2항**”을 “**법 제51조제2항**”으로 한다.

제82조제2항 본문 중 “**법 제77조**”를 “**법 제89조**”로 한다.

제83조제1항 중 “**법 제79조**”를 “**법 제91조**”로 한다.

제84조제4항 중 “**법 제81조**”를 “**법 제93조**”로 한다.

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.

제93조제1항 중 “**법 제86조**”를 “**법 제98조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**법 제83조**”를 “**법 제95조**”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」의 개정)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**”를 “**지방자치법 제61조**”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

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**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**”를 “**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**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5조제3항**”을 “**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제3항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**영 제35조제3항제1호**”를 “**영 제39조제3항제1호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영 제35조제3항제2호**”를 “**영 제39조제3항제2호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**영 제35조제3항제3호**”를 “**영 제39조제3항제3호**”로

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영 제35조제3항제4호”를 “영 제39조제3항제4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③ (생략)

제22조(조례안 예고) ① 의장은
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
에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
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,
주요 내용, 전문 등을 홈페이지
등을 통하여 예고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제30조(심의) ① ~ ③ (생략)

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
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
이 있는 2건 이상의 의안을 일
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. 다
만, 그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
야 한다.

제41조(5분 자유발언) ①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조례안 예고) ① -----

--- 법 제77조제1항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심의) ① ~ ③ (현행과 같
음)

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
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
이 있는 2건 이상의 의안을 일
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. 다
만, 그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
야 한다.

제30조의 2(주민조례청구에 관
한 심의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
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
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
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
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
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
에는 미리 조례특별위원회의 심
의를 거쳐야 한다.

제41조(5분 자유발언) ① (현행과

② 5분 자유발언은 제1항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발언의원의 의견표명,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.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.

1. 법 제9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

2. ~ 5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46조(방법) ① 표결할 경우의 장은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.

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

같음)

② -----

1. 법 제13조-----
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
다만,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<삭제>

③ -----

수 있다. <후단 신설> 다만, 이
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
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
다.

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서
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
명투표로 표결한다.

1.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
 거
2. 군수의 재의 요구
3. 그 밖에 의장·부의장 등의
 사직동의 등 인사에 관한 안
 건

제48조(투표함의 보관 및 개함)

- ① (생략)
- ② 투표함은 재적의원 5분의 1
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
64조에 따른 의결을 거쳐 본회
의의 비공개회의에서 개함할 수
있다.

제54조(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
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
공개(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
할 수 있다. 이 조에서 같다)한
다. <단서 신설>

----.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
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
야 한다. ----- 제1항-----

<삭 제>

제48조(투표함의 보관 및 개함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-----법 제73
조-----

제54조(배부 및 공개) ① -----
----- 주민-----

----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. 이 경우 해당 발언자와 협의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한다.

2. 제1호의 사유로 발언자의 불게재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 부분

③ ~ ⑥ (생략)

제58조(심사) ①·②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해당 청구취지를 듣고 청구이유

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<삭제>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심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-----

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 들
을 수 있다

⑤·⑥ (생략)

<신설>

제60조(전문위원의 직무) ① 위원
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법제59조
제2항의 회의운영 관련 직무수
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기
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
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
원장 명의로 하되, 의장에게 보
고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77조(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법
제42조제2항의 질문·답변을
위하여 그 의결로 군수의 출석
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
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
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
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82조(사직) ① (생략)

② 법 제77조에 따른 의원의 사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
같음)

제59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
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
여 발언 할 수 있다.

제60조(전문위원의 직무) ① ----
----- 법제68조
제2항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7조(출석요구) ① ----- 법
제51조제2항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2조(사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89조-----

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83조(청구서와 답변서)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서(이하 “청구서”라 한다)가 제출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의회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84조(답변서의 심사 등) ① ~

③ (생략)

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, 군수 및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법 제81조에 따른 결원통지를 해야 한다.

제90조(출입 및 방청제한) ①·②

(생략)

②·③ (생략)

-----.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3조(청구서와 답변서) ① -----

-- 법 제91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답변서의 심사 등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법 제93조-----
-----.

제90조(출입 및 방청제한) ①·②

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-----.
---------------	--------

□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보상금의 청구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군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군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이송한다.</p>	<p>제2조(보상금의 청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보상심의회의의 위원) ①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</p>	<p>제4조(보상심의회의의 위원) ①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영 제39조제3항제1호----- -----</p>

천하는 사람으로 한다.

2.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
공무원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
라 한다) 기획실장으로 한다.

3.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
직공무원은 군 보건의료원장
으로 한다.

4.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사회
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
있는 자는 도 내 대학의 법학
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
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.

② (생략)

-----.

2. 영 제39조제3항제2호-----

-----.

3. 영 제39조제3항제3호-----

-----.

4. 영 제39조제3항제4호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안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